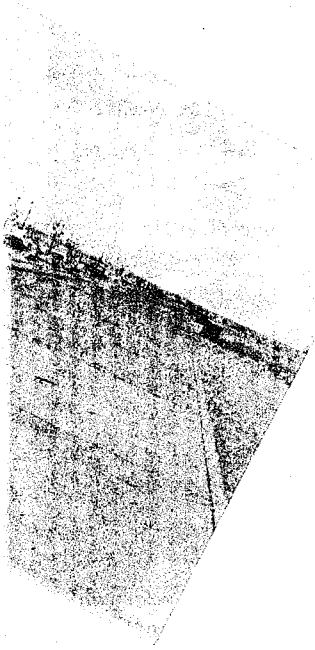


日本 漁港의 維持관리 ③

漁港施設의 利用



1. 첫째 근거가 되는 조례가 필요

어항관리자는 어항관리규정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 어항의 유지관리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어항의 유지관리는 먼저 어항관리규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어항을 비롯하여 항만, 도로 등의 공의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상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의해서 이용되는 것이므로 공적목적에 따라 이용방법을 정하고 이용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이용자의 책임 의무 등에 있어서 정해놓은 것이 어항의 경우 어항관리규정이 되는 것이다.

가. 왜 조례가 되지않으면 안되는가.

어항관리규정의 법형식에 있어서는 어항법상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어항의 행정법상의 성격, 어항관리사무가 단체위임사무라는 점과 또 어항은 지방자치법과 '공의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동법상 '법률 또는 여기에 근거한 정령(政令)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의 시설 설치 및 그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어항관리규정의 내용(이용대가의 징수, 벌칙의 적용) 등으로 보아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가.

(1) 어항관리규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가) 어항법상의 필요적 기재사항

어항관리규정은 어항관리자의 관리하는 어항시설의 유지, 보전 및 운영 기타 어항의 유지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써는 다음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① 어항관리자의 관리하는 어항 시설중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중에서 수송시설 및 어항시설 용지(공공시설용지에 한함)의 유지, 보전, 운영에 관한 사항

②어항관리자가 관리하는 어항 시설중, 기본시설 또는 기능 시설중 수송시설에 대하여 이용의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용료 등의 이용대가의 요율에 관한 사항

③어항구역내의 수역의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나) 타법령상 필요한 기재사항
어항이 지방자치법상의 '공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전술한 바이나, 지방공공단체의 관리하는 공의시설이라는 면에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안됨과 동시에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어항시설중 폐유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폐유처리시설에 해당함으로써 동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법령상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어항관리규정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①지방자치법상

㉑공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㉒공의시설 관리를 타의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것

㉓공의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㉔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㉕사용료의 징수를 부정하게 면제하였을 때의 과료

㉖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과료



(나) 어항관리규정의 임의적 기재사항

어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은 전술한 필요적 기재사항외 어항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임의로 규정해도 좋다고 되어 있으나 그 내용 등에는 제한이 있다.

즉 조례는 헌법에서 '법률의 범위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 법률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서는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어항관리규정의 제정 목적에서도 그 규정할 내용 범위에 있어서는 당연 제한되는 것이다.

다. 모범어항관리규정례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심의회의 결을 거쳐 모범어항관리규정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1957년 제19회 어항심의회의 결을 거쳐 모범어항관리규정례를 정하고 어항관리자의 지도와 관리규정제정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전술의 필요적 기재사항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일반공통적인 것을 예로서 정한 것이다.

그 주된 기재사항은 목적, 어항시설의 유지운영, 어항의 보전,항내의 질서유지, 정계박 금지구역, 위험물 등에 대한 제한 방치물건의 제거명령, 계류시설에 있어서는 행위의 제한, 양륙수송 등의 구역에 있어서 이용조정, 이용의 굴출, 점용의 허가 등, 이용료, 입출항계, 감독처분, 공익상 필요에 의한 허가의 취소와 손실보상, 벌칙, 보칙(장에 위임) 등이다.

라. 농림수산대신의 인가

어항관리자는 어항관리규정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 어항의 유지 관리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관리규정의 제정 내지 변경은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만, 농림수산대신의 직권으로 위임을 받아(국가의 기관 위임사무) 都道府縣知事が 어항관리자를 지정, 제1종 또는 제2종어항에 관한 어항관리규정인가의 직권에 있어서는 都道府縣知事에게 위임되어 있고 지사가 그 규정에 의해서 인가했을 때는 지체없이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어항관리규정의 범형식이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제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는 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미리 수산청과 협의함으로써 인가사무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 제정에 있어서 유의사항
어항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수산청과 통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지도가 행해지고 있다.

(1) 동일관리자가 2이상 어항을 관리하는 경우는 전어항에 대하여 공동되게 규정하고 어항마다 특정한 사항을 특칙으로 정하는 것은 관계 없다.

(2) 명칭은 동일관리자가 2이상 어항을 관리하는 경우는 ○○縣

(市町村) 어항관리조례로 하며 1 어항만을 관리하는 경우는 ○○ 어항관리조례로 한다.

(3) 양륙수송 등의 구역에 있어서 이용의 조정, 입출항계 규정에서 정하는 어항, 제3종어항 및 기타종류의 2이상 어항의 경우는 '제3종어항 및 제3종어항이외의 어항으로서 지사(市町村長)가 지정하는것'으로 한정해서 규정한다.

더욱 입출항계는 감시선 기타 공무에 종사하는 선박과 일정톤수 이하의 선박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 당해 어항을 근거로하는 어선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매월 입출항상황을 보고토록 특칙을 정하여도 관계 없다.

(4) 이용료 등의 요율결정에 있어서는

(가) 인접현, 동일현내의 어항, 항만과의 조정을 충분히 한다.

(나) 이용자의 부담능력 등과의 관계도 있고 어항관리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어항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한다.

2. 적정한 유지관리를 행하기 위하여는

가. 유지운영계획을 세운다.

어항관리자는 어항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항관리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모범어항관리규정례 제2조에 의하면 지사(市町村長)는 관리하는 어항시설(갑종 어항시설이라고 함)중 기본시설, 수송시설과 어항시

설용지(공공시설용지에 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 그 유지운영계획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어항의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동시에 계획에 의한 것이라면 '어항시설의 처분제한'과 '어항의 구역 및 공공공지에 있어서의 행위 제한'규정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동 규정의 단서규정 적용을 받아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필요치 않는 효과가 있다.

또 지사(市町村長)는 관리규정에 따라 상기의 갑종 어항시설 이외의 어항시설(을종 어항시설이라 함)의 유지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해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요구나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지사(市町村長)는 전술의 유지운영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는 을종 어항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중요한 권고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어항관리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지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다음은 유지운영계획의 내용으로써 공통의 것은 갑종 어항시설중 기본시설, 수송시설(부대시설용지 및 안전시설 포함), 어항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에 한함)등이며 기타 시설에 있어서는 실정에 맞게 정한다.

(1) 세입 세출예산의 산정

(가) 어항의 유지관리사무를 위한 필요경비의 계상

(나) 이용료·점용료 등 이용

의 댓가수입 예산액의 계상

(2) 각 시설별의 운용계획

기본시설·수송시설에 대하여는 공용방침, 제한사항, 점용예정 등을 정한다.(정화시설, 폐유처리시설의 가동예정, 처리방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가) 기본시설

①계류시설

㉠안벽, 물양장 등에 있어서는 사용목적별(양륙, 출어준비, 휴게 등) 또는 선형별(대형, 소형, 유어선 등)로 사용구분을 정한다.

㉡성어기에 있어서 사용·점용 등에 대하여 임시조치(시간, 장소 등을 정한다)

㉢선양장의 이용에 대하여 정한다.

㉣장기계류선 대책에 대하여 정한다.

②외곽시설

방파제, 호안등을 계류하는데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항에 준하여 정한다.

③수역시설

㉠박지: 선형별 또는 사용목적별 등에 의해서 이용구역을 정한다.

㉡항로: 구역을 명시하고 항행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선박 등의 정계박금지에 대하여 정한다.

㉢수역에 있어서의 표류물·침몰물, 기타 방치물건의 제거에 대하여 정한다.

(나) 기능시설

①수송시설

임항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은 안되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요의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정한다. 또 도로부대용지나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정한다.

②공공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이용계획에 의해서 용지의 이용구분을 명시한다.

㉡수역과 같이 공공시설용지 내에 방치된 물건의 제거에 대하여 정한다.

(3) 시설의 정비·유지보수 등에 관한 계획

(가)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나) 항내의 환경정비

(다) 공해방지, 방재대책

(라) 수축사업 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조사·홍보 등에 관한 계획

(가) 어항의 이용상황, 침폐선이나 오탁상황 등의 현지조사

(나) 이용자에 대한 이용상의 주의사항의 배부, 오염방지 등의 PR, 이용규제 등의 제시

(다) 기타

관리의 위탁, 이용료, 점용료 등의 징수의 위탁 등

나. 어항관리회의 의견을 듣는다.

어항관리회는 어항관리자의 자문에 응하고, 어항관리규정의 제정 기타 어항의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어항별로 설치하는 것이다. 또 공공시설인 어항시설 유지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위원

에 대하여는 단순히 어항의 이용자 뿐만 아니라 학식 경험자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와같이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용범위가 넓고 공공성이 특히 높은 제3종어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어항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면 좋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할 경우 어항관리자는 어항법 시설규칙에 따라 설치계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관리회의 조직에 있어서는 어항법에 정해져 있으나 회장은 어항관리자의 장인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1인, 위원은 어항종류에 따라 10인~12인으로 되어 있다.

관리회는 위원의 과반수와 회장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나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회장의 대리출석인 경우 어항법상 명문규정에는 없으나 관리회의 성질이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재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또 어항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그 지위에 있어서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 의지를 대변할 보조기관인 직원이 대리출석하여도 관계가 없으나 기타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의 성격상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 ㉠